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내 카페테리아」
전대(사용·수익)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시유재산)을 전대(사용·수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내 공유재산(카페테리아) 전대(사용·수익) 입찰 공고
나. 사용대상 및 전대(사용·수익) 조건

사용대상		전대(사용·수익)조건		
소재지	사용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예정가격 (1년 사용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지상1층	12.43㎡	카페테리아 (커피 등 음료, 디저트, 베이커리)	계약일로부터 ~ 2026.09.21.	11,855,840원 (부가세 포함)
※ 명절 전일 및 당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휴관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관				

- ※ 낙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市-도시공사 간 어린이비전센터 위수탁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사용수익허가 갱신이 불가할 수 있음

다. 입찰 및 개찰 일정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23.12.07.(목) 14:00 ~ 12.19.(화) 16:00	2023.12.20.(수) 10:00	온비드 (http://www.onbid.co.kr)	도시공사 사무실 내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 자격

-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만20세 이상)으로 개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체납)액이 없고 직접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양도불가)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자
- 다.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라. 전대(사용·수익)조건(붙임1) 및 특수조건(붙임2) 이행이 가능한 자
- 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조건의 결격사유가 없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직원 및 이용객에게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입찰방법

- 가. 입찰은 지역제한 공개경쟁 총액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 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다.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시기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5%)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라. 낙찰자로 결정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사용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 자격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라.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무효가 된 경우, 차 순위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최고가격 입찰자가 되며, 유효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하였을 때
- 나.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을 행한 경우에
- 다. 입찰 유의사항의 입찰무효사유 또는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때
-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 온비드 회원약관, 입찰 참가자준수규칙 및 본 공고를 위반한 입찰인 경우에 무효로 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위반사실이 발견이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 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 미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개시일 7일전까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 등을 필하여 사업등록증과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라.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서 각 1부
- 마. 사업운영계획서 1부
-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사. 기타 요구서류(전대(사용·수익)신청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등)

9. 낙찰자 계약의 체결 및 사용료 납부

- 가. 낙찰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대(사용·수익)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일(낙찰일부터 1개월 내)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액), 최초년도 연간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동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를 받습니다.
- 다. 기타 제세공과금(전기, 수도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전대(사용·수익)기간 1년 단위로 부과 징수합니다. 첫째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이며,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년 재산출합니다.

10. 전대(사용·수익)조건 및 특수조건 : 붙임 참조

11.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사항, 전대(사용·수익)조건, 전자입찰 관련 법령 및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 우리 공사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다. 낙찰자는 승인받은 임대시설을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적발 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한 각종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라. 낙찰자는 우리 공사 승인없이 시설변경을 할 수 없으며 승인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마. 카페 내부시설(커피머신, 인테리어 등) 일체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디자인은 반드시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 ※ 어린이 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어린이 친화적인 색상 및 디자인을 반영하여 인테리어 시공하여야 합니다.
- ※ 천장, 벽면, 주방에는 조명 및 별도의 입체적인 인테리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 내부·외부 간판의 경우, 어린이비전센터 C·I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시설 일체는 계약의 종료된 시기에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판매 상품 종류 및 가격은 반드시 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어린이비전센터의 운영 기간은 공사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아. 전대(사용·수익)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

(<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에 문의바랍니다.

2) 기타 입찰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공사 어린이비전센터 (031-560-155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대(사용·수익)조건 1부
 2. 특수조건 1부
 3. 청렴이행계약각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붙임 1)

전대(사용·수익)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사용기간

○ 사용목적

○ 사용료 :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귀 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전대(사용·수익)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 하

재 산 ☐ 유 상 ☐ 무 상 ☐ 사용 승인서

재산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내 1층 카페테리아(13m²)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신청인 주 소 :

성 명 :

2023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유 상 ☐ 무 상 ☐ 전대(사용·수익)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승인함

2023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인

어린이비전센터 카페테리아 전대(사용·수익) 조건

☐ 재산의 표시

구 분	소재지	면 적	사용범위
행정재산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1층 카페테리아	12.43m ²	커피(음료 등), 디저트, 베이커리 등

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인에게 전대(사용·수익) 한다.

제1조(사용목적) 해당 공유재산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내 1층 카페테리아 운영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09.21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년도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최종낙찰금액)으로 하며, 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매년 재산정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행하여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남양주시장 발행)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고, 잔여기간분에 대한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승인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사용기간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전대(사용·수익) 승인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남양주도시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손해보험계약금액은 상호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

제7조(사용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재산의 부과금) 사용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하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하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사용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하는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각종 사용료(공과금 포함)를 3회 이상 연체하는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사용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해 지상 물건의 사용권을 상실한 때

7. 기타 공사에서 시설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공사는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 취소시 손해배상) 본 사용조건의 위반으로 사용을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취소원서를 공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운영자 선정 시까지 카페 영업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공사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공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만료 후 승인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전대(사용·수익)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사용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적용) 기타 본 전대(사용·수익)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모든 권리 주장을 배제한다.

제20조(상호 이견 시 쌍방 간 협의)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2023년 월 일

관리위탁자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 ○ (인)

사용인 _____ (인)

붙임 2)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내 1층 카페테리아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고객 및 직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친절서비스) 공공시설내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사용인은 카페테리아를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 상품의 종류 및 가격) ① 사용인은 사용기간 개시전까지 카페에서 취급할 음료 및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공사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부정·불량제품의 경우 우리 공사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② 판매 상품의 가격 책정은 관내 및 인근 시·군의 유사품목 가격 또는 권장 소비자가격에 준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 하에 정한다.

③ 상품의 종별 및 가격,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등을 모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물을 게시 및 부착하여야 한다.

④ 모든 판매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은 즉시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사용인은 운영일 및 시간 등은 반드시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서 지정 통보한 휴무일에는 휴무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 및 청결유지) 사용인은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설 및 집기를 수시로 살균·소독 관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 사용인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 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제7조(시설관리 및 경비부담) ① 사용인은 카페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가스, 온수 사용 등에 대한 각종 공과금 및 제세금 일체를 부담하고, 카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카페 내부시설(커피머신, 기자재, 인테리어 등) 및 주방집기 등은 일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어린이 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어린이 친화적인 색상 및 디자인을 반영하여 인테리어 시공하여야 합니다.

※ 천장, 벽면, 주방에는 조명 및 별도의 입체적인 인테리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내부·외부 간판의 경우, 어린이비전센터 C·I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시설 일체는 계약의 종료된 시기에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인은 카페 시설과 물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도난, 손괴 등의 발생 시 공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인·허가 사항) 사용인은 카페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등을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대(사용·수익)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인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부작용 포함)가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사용인에 의하여 공사의 명예가 크게 손상하거나, 이용객에게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4. 카페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민원이 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기타 사용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보고의무) ① 사용인은 카페운영에 관한 민원 발생 시 3일 이내 대책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카페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을 두고자하는 경우에는 종사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관리 및 원상복구) 사용인은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그 종료와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이 원상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 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제한) 어린이비전센터의 운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운영일수 변경, 운영 시간 증·감등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운영기간 연장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사용자는 전대(사용·수익)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23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양주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대표자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